

제 1 부

세계 산업구조와 한국

제1장 | 산업분류

제2장 | 산업구조 이론

제3장 | 세계 생산 및 부가가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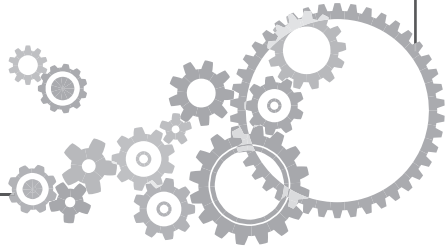
제4장 | 주요 선진국의 생산 및 부가가치 구조

제5장 | BRICs의 생산 및 부가가치 구조

제6장 | 한국의 산업구조



01 산업분류



산업분류는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때의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가리킨다.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활동도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된다(2014년 통계청 통계기준과, p. 3). 요약하면 산업분류란 어떤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과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성이 높은 것들끼리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분류에는 국제연합(UN)에 의한 산업분류인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와 각 국가의 산업분류가 있다. ISIC는 그동안 4번에 걸쳐 개정되었다(ISIC Revision 2, Revision 3, Revision 3.1, Revision 4). 개별 국가들은 국제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준용하여 각 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산업을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1 산업분류 방법

1.1 국제산업분류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ision 4) 체계는 다음과 같다. 즉 ISIC는 대분류(Section, 알파벳 A~U로 표기) 아래에 중분류(Division, 두 자리 숫자 01~99로 표기), 중분류 아래

에 소분류(Group, 세 자리 숫자로 표기), 그리고 소분류 아래에 세분류(Class, 네 자리 숫자로 표기)로 총 4단계로 되어 있다. 전체 산업이 21개 대분류(Section)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분류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인 중분류(Division)에는 88개 산업(코드와 코드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표 1> 참조)이 있다. ISIC 산업분류 체계를 대분류 중 하나인 농업·임업·어업(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ection A)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ISIC 분류 체계 예시(농림어업)

Section	Division	Group	Class
A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 - Crop and animal production, 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011 - Growing of non-perennial crops	0111-Growing of cereals (except rice), leguminous crops and oil seeds
			0112-Growing of rice
			0113-Growing of vegetables and melons, roots and tubers
			0114-Growing of sugar cane
			0115-Growing of tobacco
			0116-Growing of fibre crops
			0119-Growing of other non-perennial crops
		012 - Growing of perennial crops	0121 - Growing of grapes
			0122 - Growing of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s
			0123 - Growing of citrus fruits
			0124 - Growing of pome fruits and stone fruits
			0125 - Growing of other tree and bush fruits and nuts
			0126 - Growing of oleaginous fruits
			0127 - Growing of beverage crops
0128 - Growing of spices, aromatic, drug and pharmaceutical crops			
0129 - Growing of other perennial crops			
013 - Plant propagation	0130 - Plant propagation		
014 - Animal production	0141 - Raising of cattle and buffaloes		
	0142 - Raising of horses and other equines		
	0143 - Raising of camels and camelids		
	0144 - Raising of sheep and goats		
	0145 - Raising of swine/pigs		
	0146 - Raising of poultry		
	0149 - Raising of other animals		

(계속)

Section	Division	Group	Class
A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 – Crop and animal production, 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015 – Mixed farming	0150 – Mixed farming
		016 – Support activities to agriculture and post- harvest crop activities	0161 – Support activities for crop production 0162 – Support activities for animal production 0163 – Post-harvest crop activities 0164 – Seed processing for propagation
		017 – Hunting, trapp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0170 – Hunting, trapp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02 – Forestry and logging	021 – Silviculture and other forestry activities	0210 – Silviculture and other forestry activities
		022 – Logging	0220 – Logging
		023 – Gathering of non-wood forest products	0230 – Gathering of non-wood forest products
		024 – Support services to forestry	0240 – Support services to forestry
	03 – Fishing and aquaculture	031 – Fishing	0311 – Marine fishing 0312 – Freshwater fishing
		032 – Aquaculture	0321 – Marine aquaculture 0322 – Freshwater aqua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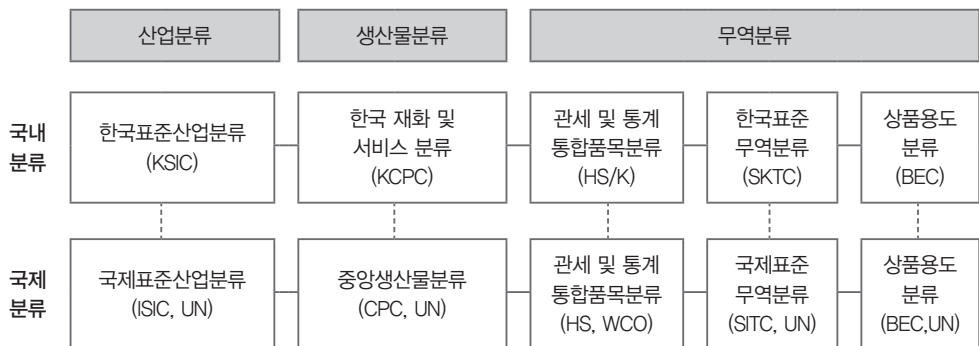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산업분류 역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약간의 변화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세부분류에 있어서는 각국의 표준산업분류(북미 산업분류는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유럽은 Gener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NACE)는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 UN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은 주요 국가들의 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어 국가 간 산업통계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¹

한국 통계청에서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기초하여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제조업), 1964년(비제조업)에 걸쳐 최초 제정한 이후, 2017년까지 10차례 개정하여 운영 중이다(〈표 1-2〉 참조). 2017년 고시된 제10차 개정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4차 개정분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ision 4)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통계청 통계설명 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세금 및 공공요금 부과,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서 행정 목적으로 준용하는 사례(2004년 48개 ⇒ 2014년 89개)가 많아지고 있다(통계청 통계설명 자료). 산업분류 이외에도 한국의 경제분류(생산물분류, 무역분류)는 UN 등 국제기구의 분류체계를 준용하되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미국, 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 역시 산업분류 시 국제기구의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세부 분류에 있어서는 국가 간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통계청이 산업을 분류할 때 분류의 범위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된다. 어떤 단위(예를 들면 기업)가 어떤 산업에 해당되는가는 그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



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기본계획 요약”

그림 1-1 통합 경제분류 연계 체계

1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내용은 주로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규 단계별 분류 항목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3	8	8	21	21	34	34
B. 광업	4	4	7	7	12	10	17	11
C. 제조업	24	25	83	85	180	183	461	47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4	3	6	5	9	9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4	5	6	11	14	15	19
F. 건설업	2	2	7	8	14	15	42	45
G. 도매 및 소매업	3	3	20	20	58	61	164	184
H. 운수 및 창고업	4	4	11	11	20	19	46	48
I. 숙박 및 음식점업	2	2	4	4	8	9	24	29
J. 정보통신업	6	6	11	11	25	24	42	42
K. 금융 및 보험업	3	3	8	8	15	15	33	32
L. 부동산업	2	1	6	2	13	4	21	1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4	13	14	19	20	50	5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3	7	11	13	22	21	32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5	5	8	8	25	25
P. 교육 서비스업	1	1	7	7	16	17	29	3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2	6	6	9	9	21	2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2	4	4	17	17	43	4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3	8	8	18	18	43	41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	2	3	3	3	3	3	3
U.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	1	1	1	2	2
21	76	77	228	232	487	495	1,145	1,196

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어떤 활동이 주된 산업활동인가 하는 것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나, 부가가치(액)의 측

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된다(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한편 생산단위(기업 등)를 어떤 산업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산출물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뿐만 아니라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과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복합적인 활동단위는(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 하나의 주된 산업으로 분류(Top-Down 방식)한다. 특히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한다(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 5단계로 구성된다(구체적인 산업분류 내용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² 참조). 국제표준산업분류는 세분류까지만 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세분류까지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구조는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4를 기본체제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부표 1〉과 〈부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에 있어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어서 중분류 수는 77개로 국제산업분류 중분류 수 88보다 더 작다. 중분류 이하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제산업분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0”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도록 하였으며 “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 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9” 기타 항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분류 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분류가 세분되지 않을 때는 “0”을 사용한다(예를 들면 중분류 02/임업, 소분류/020)(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

2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개정분류해설서), 2017.

표 1-3 한국표준산업분류 : 농림어업 중분류 및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012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3	어업	031	어로어업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아래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 정의를 대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중분류 이하 단위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참조).³

1.2.1 농업, 임업 및 어업(A : 01~03)

농업·임업·어업(A)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01)**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각 산업의 내용은 <표 1-3>과 같다.

임업 및 관련 서비스업(02)은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야생 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을 채취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03)**에는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한편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하며,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기타 기관에서 농업 경영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1531 경영컨설팅업”에 분류한다.

3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대한 내용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1.2.2 광업(B : 05~08)

광업은 지하 및 지표, 해저 등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개발·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제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 개선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 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 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채취·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는 <표 1-4>와 같다. 한편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분류된다.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금속 광업(06)은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

표 1-4 한국표준산업분류 : 광업 중분류 및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	석탄 광업
		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	금속 광업	061	철 광업
		062	비철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	토사석 광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활동도 포함한다.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07)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 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활동도 포함한다.

광업 지원 서비스업(08)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수리·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1.2.3 제조업(C : 10~34)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분류는 <표 1-5>와 같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 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 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표 1-5 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중분류 및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병과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 원단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계속)

	중분류		소분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계속)

14 제1부 세계 산업구조와 한국

	중분류		소분류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3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계속)

	중분류		소분류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한편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활동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 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그러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또한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 : 35)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 공기의 생산·공급사업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산업의 분류는 <표 1-6>과 같다. 단, 정유공장에서의 석유 정제 가스 생산활동(이는 산업분류 192에 해당), 차량용 가스 충전소 운영활동(이는 산업분류 47712에 해당) 등은 이 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1-6 한국표준산업분류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분류 및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 36~39)

이 대분류에는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집수·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활동, 하수처리 활동, 고형 혹은 비고형 등 각종 형